

#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

## 1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,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신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함.

## 2. 대상 펀드

운용사	펀드명	설정일	발생일자	수시공시일자
AB	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A	2011/04/01	2013/05/31	2013/06/03
	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C1			
	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C2			
	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C3			
	AB퓨처트렌드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 C4			

## 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

-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임.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.
- 처리 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(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)